환자안전법



[시행 2021. 1. 30.] [법률 제16893호, 2020. 1. 29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 (의료기관정책과) 044-202-2472

- 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(質)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 1. 29.>
 - 1. "환자안전사고"란「보건의료기본법」제3조제3호의 보건의료인(이하 "보건의료인"이라 한다)이 환자에게 보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(危害)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.
 - 2. "환자안전활동"이란 국가, 지방자치단체,「보건의료기본법」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(이하 "보건의료기관"이라 한다), 보건의료인, 환자, 환자의 보호자 및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- **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관, 보건의료인,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행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활동에 환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4조(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)** ①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따라야 한다.
 -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·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, 필요한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-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에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5조(환자의 권리와 책무)** ① 모든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(「보건의료기본법」제3조제1호의 보건의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
 - ②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.
- **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** ① 환자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환자안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7조(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자안전종합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환자안전활동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
 - 2. 환자안전활동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
 - 3. 환자안전활동의 실태 파악, 제16조에 따른 보고 학습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
 - 4.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기술의 연구·개발,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 - 5. 제9조에 따른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

- 6.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방안
- 7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・법인・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・법인・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- ⑥ 종합계획은 「보건의료기본법」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.
- 제7조의2(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보건의료기관의 장, 그 밖에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. 29.]

- 제8조(국가환자안전위원회) ① 환자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0. 1. 29.>
 - 1.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
 - 2.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
 - 3.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의 분석 결과 활용 및 공개
 - 4. 그 밖에 환자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0. 1. 29.>
 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,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개정 2020. 1. 29.>
 - 1.「의료법」제28조에 따른 의사회·치과의사회·한의사회·조산사회·간호사회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- 2. 「약사법」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
 - 3. 노동계,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,「소비자기본법」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 한 사람
 - 4. 환자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5.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 - 6.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(이에 상당하는 특정직·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)
 - ④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 -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・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의2(중앙환자안전센터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중앙환자안전센터 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이행과제 추진
 - 2. 제9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및 제10조에 따른 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보급 지원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제11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지원
- 4. 제12조에 따른 전담인력의 관리 지원
- 5. 환자안전사고의 접수・검증・분석
- 6.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구
- 7. 그 밖에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중앙환자안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20. 1. 29.]

제8조의3(지역환자안전센터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 •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지역환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- 1. 환자안전사고 관련 교육 사업
- 2.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홍보 활동
- 3. 환자안전사고 보고 지원
-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환자안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환자안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·운영과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. 29.]

- 제9조(환자안전기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시설·장비·관리체계,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등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(이하 이 조에서 "환자안전기준"이라 한다)을 정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 시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**제10조(환자안전지표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・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 지표(이하 "환자안전지표"라 한다)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 - ② 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**제11조(환자안전위원회)**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・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구성·운영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20. 1. 29.>
 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.<개정 2020. 1. 29.>
 - 1.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
 - 2. 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・운영
- 4.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
- 5.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
-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
- ④ 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제2항에 따른 보고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20. 1. 29.>
- 제11조의2(환자안전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의 관계) 제11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환자안전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 1. 29.]

- **제12조(전담인력)**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(이하 "전담인력"이라한다)을 두어야 한다. <개정 2020. 1. 29.>
 - 1.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 관에서 근무한 사람
 - 2. 「의료법」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
 - ②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20. 1. 29.>
 - ③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20. 1. 29.>
 - 1.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・분석 및 관리・공유
 - 2.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
 - 3.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
 -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
 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20. 1. 29.>
 - ⑤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배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방법·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20. 1. 29.>
- 제13조(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) ①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 교육 외에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인력이나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·시간·내용,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**제14조(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)** ①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. 29.>
 -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20. 1. 29.>
 - 1.「의료법」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, 수혈,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・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
 - 2.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·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
- 4.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·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
- ③ 제1항에 따른 보고(이하 "자율보고"라 한다)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「의료법」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<개정 2020. 1. 29.>
- ④ 자율보고 및 제2항에 따른 보고(이하 "의무보고"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20. 1. 29.>

[제목개정 2020. 1. 29.]

- **제15조(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)**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- 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
 - 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
 - 3.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 - 4.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한국소비자원
 - 5. 그 밖에 환자안전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 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5조의2(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 - 1.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 - 2.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한국소비자원
 - 3. 「약사법」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
 - 4.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
 - 5. 그 밖에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 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)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. 29.]

- 제16조(환자안전사고 보고·학습시스템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보고된 환자안전 사고에 관한 정보와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조사·연구와 그 공유에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·학습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"보고학습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. 29.>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경보를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<개정 2020. 1. 29.>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주의경보 발령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자가 아닌 다음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20. 1. 29.>
 - 1.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제조・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
 - 2.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자 및 관리자
 - 3.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
 -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⑦ 보고학습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위탁 및 경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 보장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고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, 보고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보건의료 기관의 장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. <개정 2020. 1. 29.>
 - ②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와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율보고를 한 자(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에 한정한다)가 동의한 경우 그 사람의 개인식별정보는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20. 1. 29.>
 - ③ 환자안전사고의 정보 수집·분석 및 주의경보 발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속한 제14조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, 전보나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.<개정 2020. 1. 29.>

제18조(벌칙) ①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1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의료기관의 장
- 2.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를 방해한 자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- 2.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. 29.]

[제목개정 2020. 1. 29.]

부칙 <제16893호,2020. 1. 29.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제3호, 제11조제3항제4호,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